

[첨부]

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

□ **(지원대상)** 「소득기준」과 「가구원특성기준」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
- 소득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가구원특성기준 :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 - (노인) 주민등록기준 1958.12.31.이전 출생자
 - (영유아) 주민등록기준 2017.01.01.이후 출생자
 - (장애인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- (임산부)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 - (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희귀질환[별표4], 중증난치질환[별표4의 2]을 가진 사람
 - (한부모가족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“모” 또는 “부”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 - (소년소녀가정)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

□ **(지원금액)**

구분	1인 세대	2인 세대	3인 세대	4인 이상 세대
하절기 바우처	31,300원	46,400원	66,700원	95,200
동절기 바우처	118,500원	159,300원	225,800원	284,400
총 지원금액	149,800원	205,700원	292,500원	379,600

*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

*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(최대 45천원,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)

*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

□ **(지원절차)** 신청·접수(읍·면·동) → 선정·결정통지(시·군·구) → 바우처 생성·

카드(실물/가상)발급*(카드사, 에너지공급사 등) → 사용·정산·모니터링(전담기관, 지자체 등)

* 요금차감은 신청 시,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(납부자번호)가 필요하며, 국민행복 카드는 신청 후,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(방문·전화)하여 발급하여 이용

□ **(신청기간)** 2023년 5월 31일 ~ 2023년 12월 29일

□ **(지원기간)**

구분	지원기간	지원내용
하절기 바우처	2023년 7월 1일 ~ 2023년 9월 30일	·요금차감(전기)
동절기 바우처	2023년 10월 11일 ~ 2024년 4월 30일	·요금차감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택1) ·국민행복카드(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)

*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(작성)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,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카드 결제 완료